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의안 번호	190
----------	-----

제출년월일 : 2004년 3월 1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능이 이관 운영됨에 따라 자산의 출연이 필요하며
- 도 소유로 되어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장비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출연자산 내역

품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	잔존가액
서버, PC, 비품 등	953,800천원	401,000천원	552,800천원

※ 1999년 12월부터 도입된 컴퓨터 장비 및 시설, 사무용 비품 등임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2항 “도 및 시·군은 출연금 또는 현물” 조항과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9조 “소프트웨어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를 근거로 자산 출연

☐ 자산목록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주요자산출연내역

2004. 1. 31 현재

(단위 : 원)

번호	자 산 명	수량	취득가액	취득일자	잔존가액
1	서버(GP7000/400)	1	28,300,000	2000. 2. 15	7,075,000
2	Workstation/그래픽서버	2	29,819,400	2000. 2. 15	7,454,850
3	Mainswitchhub(Omni-5wx)	1	18,600,000	2000. 2. 15	1,650,000
4	S/W(Maya Complet Package)	2	31,900,000	2000. 2. 15	7,975,000
5	S/W(Oracle Enterprise)	1	16,450,000	2000. 2. 15	362,500
6	S/W(Uni sql X4.Ok, Uni web, Vision3)	1	20,900,000	2000. 2. 15	5,225,000
7	LCD Projeter(LPF-6200)	1	13,200,000	2000. 8. 15	3,300,000
8	Gigabit Backbone Switch	1	22,000,000	2002. 9. 13	16,500,000
9	방화벽 Server(Ultra60)	1	10,000,000	2002. 9. 13	7,500,000
10	LCD Projector(PLC-XP46)	1	12,950,000	2002. 9. 11	9,712,500
11	냉·난방기(업체용)	17	33,663,000	2002. 9. 4	25,247,250
12	무인경비 시스템	1	10,516,000	2002. 9. 11	7,887,000
13	CD자동복사기	1	13,200,000	2002. 10. 8	9,900,000
14	믹서	1	10,459,500	2003. 12. 30	10,459,500
15	방음 및 의장공사	1	17,334,000	2003. 12. 27	17,334,000
16	PC	92	112,332,000	2004. 1. 11	112,332,000
17	17인치 LCD 모니터	56	21,098,000	2004. 1. 11	21,098,000
18	Backup Xcelerator Standard V2.0, Server	1	15,871,000	2004. 1. 11	15,871,000

※ 취득가액 1천만원 이상 자산목록임

관 계 법 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
4.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
6. 도지사가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
7. 중앙 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